

정책제언

# 다문화 청소년 지원 교육법 개정해야

 **성상환** |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

최근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선 다문화 학생들이 몰려드는 밀집학교가 생기는 등 교육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다문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교육수요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정규학교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탈북청소년까지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은 약 27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다.

다문화교육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교육의 형평성은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의미에서의 ‘형평성’은 투입된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정보나 복지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주배경 아동들은 한국의 다른 아동들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한국의 아동에게 똑같이 피자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는 것을 교육의 형평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당국은 이러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공교육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아동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적 감수성을 고양시킬 필요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문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절실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들이 서로 연계해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언어교육, 학교생활 지원, 진로지도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도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들이 지역의 자원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이 보다 선진화되어 글로벌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올해 4월 ‘LG와 함께하는 동이다문화상 시상식’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4명도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필자는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많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청소년들이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도 묵묵히 성장해 오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들을 목격했다. 이제 급증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출처:동아일보\_성상환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정부동향

법제처

## 입법영향분석, 객관적 통계와 자료로 뒷받침한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법제처는 5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4일(화)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①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② 인허가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제17조제3항 · 제4항 · 제6항)
    -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또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 ②인허가의제 협의 · 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제4조제2항)
    -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 ③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제7조제4항)
    -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 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으며,
  -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를 찾는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를 찾아요’라는 표어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5.19~6.18)을 운영한다.
  - 2015년부터 시작된 꿈드림 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하며,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 그동안 꿈드림 청소년단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에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 왔으며 '21년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개선 결과,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혹은 0000년생~0000년생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하여 많은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수정하였고, 각종 학생 대상의 요금 할인을 위한 증빙 서류에 청소년증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입장 시에 학생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던 테마파크에 개선을 요청하여 같은 나이의 청소년에게도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대학박람회 학교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브리프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방안

소순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 1. 논의의 배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실시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및 기능은 대폭적으로 강화된 반면 아직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성은 낮은 상황임

향후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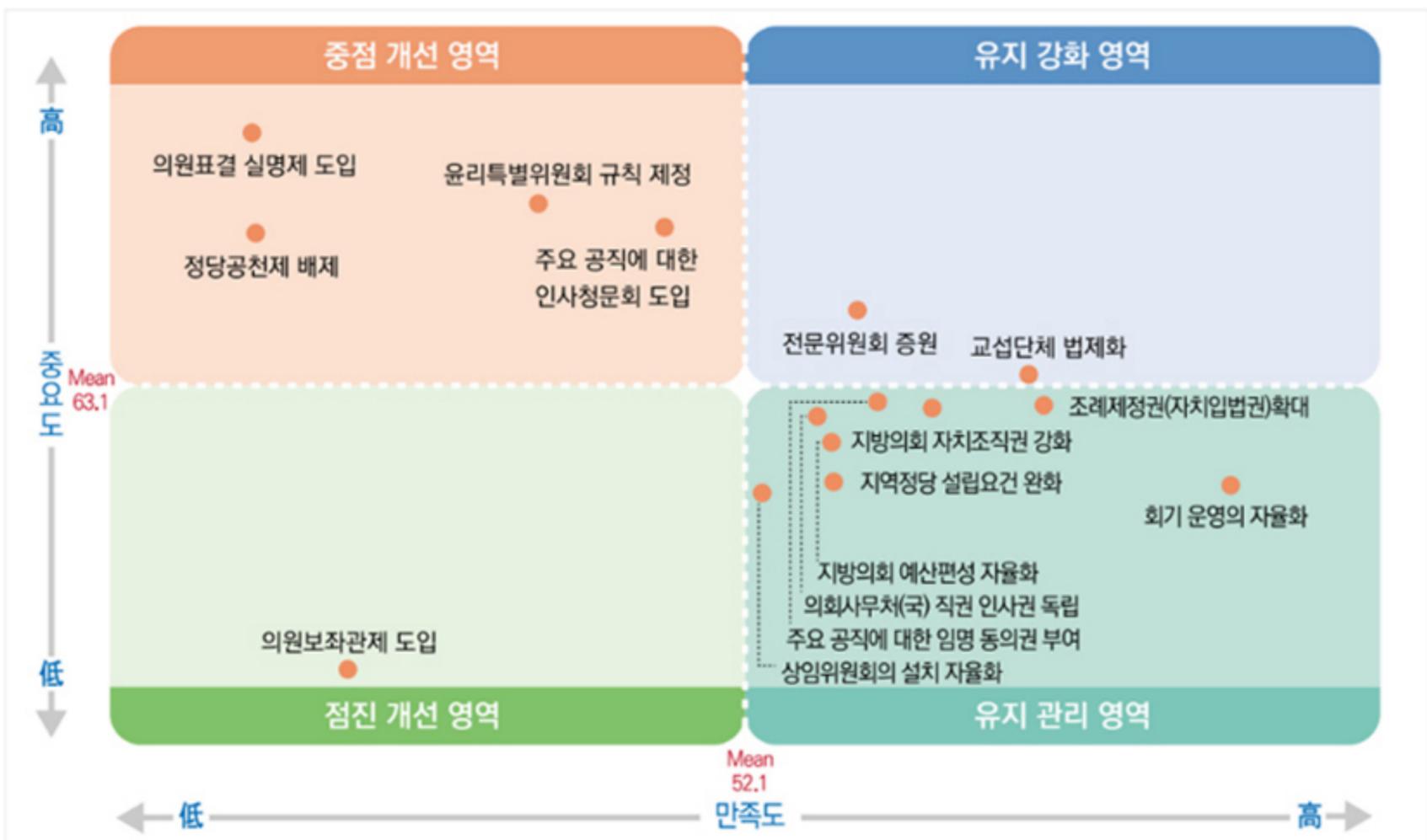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도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

## 2. 현황

### 1)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중요도가 높다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음. 이는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와 같은 제도의 중요성이 높고, 한편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을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분석임

[그림 1] 지방의회 활성화과제에 대한 분석



## 2) 국회의 윤리심사기구

먼저 1991년 이후 국회는 상설특위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2018년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이후에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회의 신뢰성 제고에서 후퇴함.

• [표 1] 국회의원 윤리심사기구의 변화

대별	국회법시행일	윤리심사기구(위상)
제헌	1948.10.2	징계자격위원회(상임위)
제5대	1960.9.26	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
제13대	1991.5.31.	윤리특별위원회(상설특위)
제20대	2018.7.17.	비상설특위로 전환(2020년3월 현재 미구성)

## 3) 외국의 윤리심사기구

### • 미국의 의원 윤리심사기구

#### ① 윤리위원회

- 1967년 상·하 양원에 “윤리위원회”를 상임위원으로 설치 운영
-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동수(각 5인)으로 구성
- 주요 기능 : 윤리교육 실시, 의사규칙이나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조사하여 권고사항을 하원에 보고, 재산신고서를 검토

#### ② 의회윤리실(The House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의 한계 지적으로 2008년 “의회윤리실”을 설치
- 비당파적 인사로 구성되어 의원윤리심사 자문기구
- 주요 기능 : 윤리문제가 제기될 경우 사전조사 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
- 구성 : 입법·사법·기업·학계 등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

### • 영국의 의원 윤리심사기구

#### ① 독립의회윤리기구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IPSA)

- 2009년 주택수당 과다청구 스캔들 발생 이후 의원윤리심사기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설
- 주요 기능 : 의정활동 관련 비용청구를 검토, 세비 및 비용지출을 감독
- 구성 : 의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

#### ② 윤리 및 특권 위원회 (Committee on Standards and Privileges, 상설위원회)의 2013년 분리

- 윤리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와 특권위원회(Committee on Privileges)로 분리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 윤리위원회에 최소 2인 이상 외부전문가로 선임
- 현재 윤리위원회 위원 14인 중에서 7인은 하원의원, 7인은 일반인 위원으로 구성

③ 윤리감찰관(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Standards)

- 주요 기능 : 의원윤리 문제에 대한 신고사항을 조사하고, 의원의 이해관계 등록을 관리감독
- 하원의결로 임면되어 신분과 활동에 독립성 보장

○ 4) 서울특별시의회의 윤리심사기구 상설화

•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추진

-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손상된 시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고히 함

**서울특별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39조 (윤리특별위원회)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 2에 따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① 법 제35조에 다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조례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판단과 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 윤리위원회, 윤리심사자문기구의 상설화 및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의 참여
-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 :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평가, 의정활동 및 지역구활동 평가, 제출자료 및 설문조사 등
- 지방의원 겸직제한 : 소속 상임위 관련 영리목적의 겸직 제한, 위반 및 미신고시 징계규정의 명문화
- 영리행위 금지제도 개선 : 부동산 거래 신고, 주식 백지신탁, 이권개입 금지, 취업청탁 인사 개입 금지 명문화
-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 회의 인터넷 공개 및 방청 허용,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 주민감시단 제도화, 안건별 찬반 실명제, 의회권한 남발 금지 규정 명문화
- 정당-시민단체-지자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공천과정의 투명화 및 책임성 확보,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제도화의 노력과 함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알기쉬운 정책용어

딱 풀 이 딱 딱 한 정 책 용 어 풀 이

## 기후행동 1.5°C 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모아놓은 통합플랫폼



앱 하나로 쉽고 편하게 탄소중립 실천하세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1.5°C 이내로 낮춰야 해요!

### 3가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한 곳에서 편하게

일상생활 속 탄소절감을 실천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3가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후행동 1.5°C 앱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포인트 적립 방법 등  
바로 확인 가능!

종류	대상	포인트 지급 조건
탄소포인트	가정·상업시설 및 아파트단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전자	주행거리 감축 실적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국민 누구나	개인별 친환경 활동 실적 (다회용기 사용 등)

알기쉬운 정책용어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어린이·청소년들이 쉽게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환경보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실천일기 쓰기, 퀴즈 풀기, 실천과제 도전,  
쓰레기 줍기 게임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탄소중립, 바로 지금 나부터!**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검색 후 설치해 주세요!**